

『정기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4.05.31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	내 8	
상 품 특 징	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		
상품유형	정기예금		
가입 대 상	제한없음		
계 약 기 간	1개월 이상 ~ 3년 이하 (연, 월, 일 단위), 4년제, 5년제		
가 입 금 액	1만원 이상		
기 본 금 리	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
세 제 혜 택	0	가입 자격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	
예금자보호	0	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적용	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 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8		
중도해지 금리	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.1%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연 0.15%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연 0.2% 6개월 이상 (단, 연 0.2% 미만 시 0.2% 적용) (주1) 차등을: 기간(6개월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: 60% 적용, 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: 70% 적용, 11개월 이상 경과시: 90% 적용 (주2) 경과을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)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		
만기 후 금리	■ 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2 ■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4		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

『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- ■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중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■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 유선가입시는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■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중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「정기예금」

■ 상품특징: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

2 거래 조건 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중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4.05.31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8		
가 입 대 상	■제한없음	상 품 유 형	■정기예금
거 래 방 법	■신규 : 영업점 ■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가 입 금 액	■ 1만원 이상
계약기간	■ 1개월 이상 ~ 3년 이하 (연,월,일 단위), 4년제, 5년제		
이자지급방식 (택일)	■만기일시지급식: 만기(후) 해지시 이자를 지급 ■월이자지급식: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		
기 본 금 리	■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
	■ 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(원미만 절사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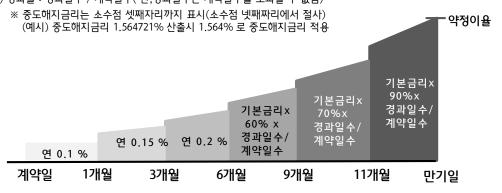
기간	중도해지금리
1개월 미만	연 0.1%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%
4AIO 1945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{(주}
6개월 이상	(단, 연 0.2% 미만 시 0.2% 적용)

(주1) 차등율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

6개월 이상~ 9개월 미만 경과시 60% 적용, 9개월 이상~11개월 미만 경과 시 70%적용,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% 적용

(주2) 경과율: 경과일수 / 계약일수(단,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
중도해지금리



	■ 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2				
	■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4				
만기 후 금리	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2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4				
	만기 후 1개월 이내 1개월 만기 후 1개월 초과				
이자계산방법	■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월별 계산				
일 부 해 지	■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일부해지 가능 (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) ■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				
재예치	■ 만기일 또는 만기 후 재예치 가늉	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■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(일부해지 포함)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				
	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				
세 제 혜 택 (개인,개인사업자)	■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) ■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
양도 및 담보 제공	■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				
계약해지방법	■ 영업점, 비대면채널 (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)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※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 ■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(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) 하며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 계약이자를 계산하여 지급				
연계·제휴서비스	■해당사항없음				
통 장 발 행	■ 통장 미발행 가능				
휴면예금 및 출연	■예금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				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			
자료열람요구권	 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 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■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1), 고객의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	
예금자보호여부	이 예금보염공사 보호금융상품 인연 최고 5원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
-					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

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 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 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중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■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